

# 맞벌이 가구의 노동시장과 경제활동

임 용 빈\*

## I. 머리말

2019년 여성의 고용률<sup>1)</sup>은 51.6%로 전년대비 0.7%p 증가했는데, 30~50대 남성의 고용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여성은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혼(유배우자) 여성 취업자는 감소했으나(전년대비 8천 명 감소), 기혼 여성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전년대비 93천 명 감소)하여 30대 기혼 여성 고용률은 55.3%로 전년대비 1.7%p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배우자 여성의 고용률은 2016년 80%를 기록한 이후 2019년 77.7%까지 점차 낮아지면서 여성의 고용증가가 유배우자(맞벌이)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에 대한 여러 관찰과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맞벌이 가구의 관점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본고는 맞벌이 가구가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들의 소득구조와 지출규모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제II장은 지역별고용조사<sup>2)</sup>를 통해 맞벌이 가구의 특징과 자녀 유무에 따른 맞벌이 여부를 30대와 비교하면서 살펴보았다. 제III장은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개인단위의 임금수준, 가계금융복지조사<sup>3)</sup>를 통해 가구단위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살펴보았고, 추가적으로 맞벌이 이행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며 맞벌이 가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한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ybim@kli.re.kr).

1)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2) 지역별고용조사는 2013년 이후 전·후반기(4월, 10월)로 나누어 가구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가조사를 통해 개인단위로 자녀 유무별 노동시장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그중 후반기(2013년 이전에는 2분기)에 동일 가구 정보 키 번호가 제공되어 동거 중인 부부의 노동시장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3)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구단위의 소득, 지출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횡단 및 패널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맞벌이 가구의 이행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 II. 맞벌이 가구 노동시장의 특징

### 1. 맞벌이 가구의 분포와 근로형태

‘지역별고용조사’ 기준 2018년 유배우가구 12,245천 가구 가운데 가구주<sup>4)</sup>와 배우자 모두 취업자로 분류하는 5,675천 가구(46.3%)를 맞벌이 가구로 정의하고 있다(표 1 참조). 2017년까지 맞벌이 가구의 비율은 43~45% 수준으로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는데 2018년 들어 맞벌이 가구는 전년대비 219천 가구 증가했다. 그중 직장이나 육아, 건강 등을 이유로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구<sup>5)</sup>를 제외하면 4,993천 가구로, 맞벌이 참여비율(46.3%)은 전체 가구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현재 동거하고 있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표 2 참조), 2018년 10월 기준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가 9,385천 가구이다. 맞벌이를 제외하고 홀

〈표 1〉 맞벌이 가구 현황

(단위 : 천 가구, %)

	유배우 가구			유배우 동거가구				
	전체 가구	맞벌이 가구	비율	전체 가구	(여성 가구주)	맞벌이 가구	(여성 가구주)	비율
2011	11,761	5,241	44.6	10,682	(416)	4,778	(119)	44.7
2012	11,822	5,201	44.0	10,619	(381)	4,673	(122)	44.0
2013	11,940	5,175	43.3	10,631	(391)	4,666	(135)	43.9
2014	12,049	5,331	44.2	10,759	(417)	4,750	(155)	44.1
2015	12,139	5,358	44.1	10,776	(447)	4,749	(178)	44.1
2016	12,190	5,545	45.5	10,776	(462)	4,875	(187)	45.2
2017	12,224	5,456	44.6	10,837	(573)	4,807	(239)	44.4
2018	12,245	5,675	46.3	10,791	(580)	4,993	(253)	46.3

주 : 2011~2012년은 2분기(6월), 2013년 이후는 하반기(10월) 기준으로 비교에 유의.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 4) 가구를 대표하여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원을 가구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주로 남성이 가구주에 해당한다. 여성이 가구주인 경우는 58만 가구로, 이 중 25만 가구가 맞벌이 부부이다.
- 5) 비동거 배우자의 경우 경제활동상태, 취업시간만을 알 수 있어, 이후의 가구는 동거 중인 맞벌이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이하 외벌이 가구)는 4,392가구(가구주 3,935천 가구, 배우자 457천 가구)로 맞벌이 가구보다 적게 나타난다. 가구주와 배우자 중 한 가구원이라도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약 10만 가구이고, 두 가구원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가구는 131만 가구로 대부분 60세 이상 고령층 부부인 경우에 해당한다.

종사상 지위별로 가구원 및 배우자 모두 상용직인 경우는 178만 가구로 2017년에 비해서 13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두 가구원 모두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인 경우는 123만 가구로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가구주는 비임금근로자이면서 배우자가 상용직으로 종사하는 맞벌이 형태가 51만 가구, 반대의 경우는 33만 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전년동기에 비해, 가구주의 종사상지위와 상관없이 배우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맞벌이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을 통해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맞벌이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주의 연령대가 40대와 50대일 경우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배우자의 연령대가 40대일 경우 맞벌이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맞벌이 비율이 2011년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30대 부부의 경우, 40% 초반의 맞벌이 비율이 나타나던 2011년과 달리 2018년 들어 50.3%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30대 여성의 고용률 증가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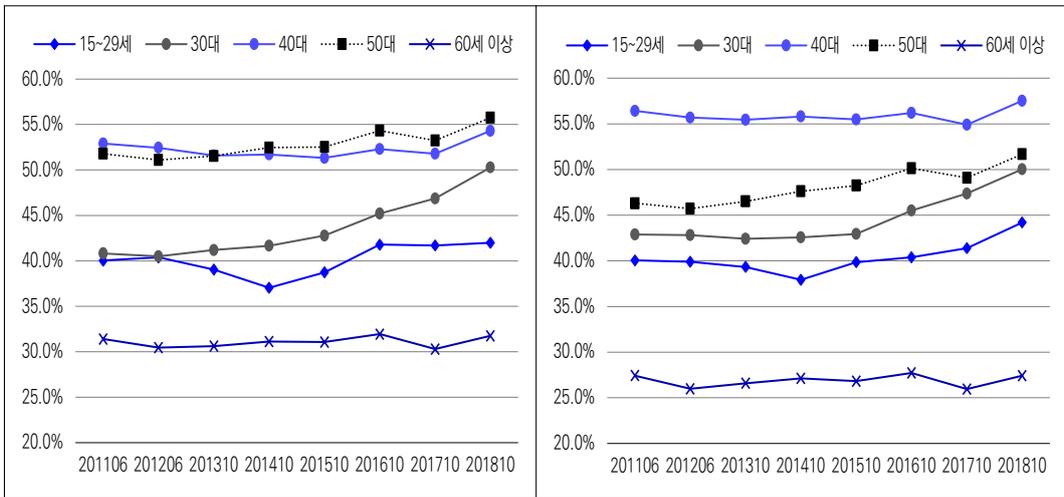
〈표 2〉 맞벌이 가구 형태(2018년 10월)

(단위 : 천 가구)

		가구주의 배우자					전 체
		상용직	임시일용직	비임금근로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가 구 주	상용직	1,781 (125)	475 ( 2)	326 ( 8)	79 ( 2)	2,356 (-151)	5,017 (-13)
	임시일용직	184 ( 21)	201 (-10)	66 ( 2)	19 ( 3)	481 (-21)	952 ( -5)
	비임금근로자	509 ( 15)	219 ( -5)	1,232 ( 28)	20 (-1)	980 (-125)	2,959 (-87)
	실업자	38 ( 2)	22 ( 3)	11 ( 4)	14 ( 5)	74 ( -3)	159 ( 11)
	비경제활동인구	159 ( 20)	160 ( 35)	68 ( -1)	12 (-3)	1,305 ( -2)	1,704 ( 48)
	전 체	2,672 (183)	1,076 ( 24)	1,703 ( 42)	144 ( 6)	5,197 (-302)	10,791 (-46)

주: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 가구주(왼쪽), 배우자(오른쪽)의 연령대별 맞벌이 참여 비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을 보면 지역별로 전 연령의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낮게 나타나는 반면, 제주도, 전남, 충남 등 도 지역에서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 지역에서는 고령층 인구 비율이 비교적 높은 만큼, 부부가 모두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형태의 맞벌이가 주를 이루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가구주가 30대일 경우 서울, 대전, 부산 등 광역대도시에서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사무직 및 전문직 일자리가 풍부한 대도시로 유입한 30대 연령층이 주로 맞벌이 가구를 형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 울산광역시의 경우 연령대와 상관없이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맞벌이 부부의 교육수준 구성 역시 달라지고 있다(그림 2 참조). 부부 모두 대졸 이상(전문대졸 포함)인 가구가 전체 맞벌이 가구 중 25.3%를 차지했던 2011년과 달리 2018년에는 36.3%로 크게 증가했다. 부부 모두 고졸이나 중졸 이하인 비중이 2011년에 48%에 달했으나, 2018년에는 대졸 이상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가구주가 대졸 이상이고 배우자가 고졸 이하 등으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배우자보다 높은 가구는 줄어들고, 그 반대 형태의 가구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외벌이 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맞벌이 가구에서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4 참조), 부부 모두 도소매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55만 가구로 가장 많다. 부부 모두 농림어업(49만 가구)에 종사하는 경우는 고령층 가구가 주로 분포되어 있다. 부부가 공공행정 및 교육서비스업에서 사무직, 전문직으로 종사하는 경우는 30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부부가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고

〈표 3〉 거주 지역별 맞벌이 참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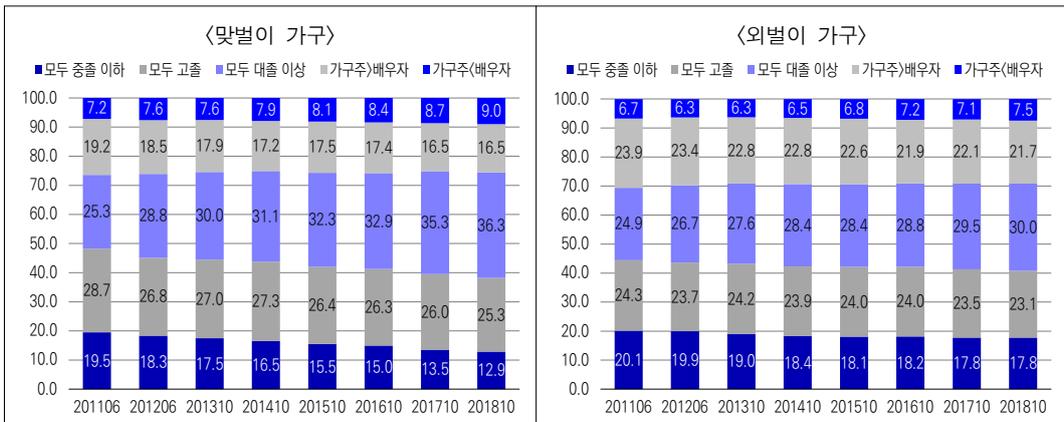
(단위 : %, %p)

전체 연령			30대 가구주		
거주지역	맞벌이 비율	(전년대비증감)	거주지역	맞벌이 비율	(전년대비증감)
제주특별자치도*	63.2	(0.1)	강원도*	59.8	( 9.8)
전라남도	58.2	(2.3)	제주특별자치도*	58.4	(-9.8)
충청남도	56.6	(1.0)	서울특별시	56.2	( 1.3)
강원도*	55.0	(3.6)	대전광역시	55.5	( 9.1)
경상북도	54.9	(2.4)	세종특별자치시*	51.9	( 2.6)
충청북도	53.6	(0.3)	전라북도	51.6	( 6.8)
전라북도	53.1	(2.8)	부산광역시	51.1	( 7.0)
세종특별자치시*	52.4	(1.5)	인천광역시	49.5	( 4.4)
경상남도	49.6	(2.4)	경기도	49.5	( 3.0)
대전광역시	46.7	(4.5)	전라남도	49.4	( 6.0)
광주광역시	46.1	(2.9)	광주광역시	48.4	( 2.1)
인천광역시	45.6	(1.9)	충청북도	48.0	(-1.1)
경기도	44.2	(2.3)	경상북도	46.8	( 5.3)
대구광역시	42.1	(2.6)	충청남도	46.8	( 0.4)
서울특별시	40.0	(0.1)	경상남도	45.8	( 5.1)
부산광역시	38.6	(2.4)	대구광역시	40.4	( 1.3)
울산광역시	38.0	(1.7)	울산광역시	39.6	( 6.4)

주 : \*조사표본이 적은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맞벌이/외벌이 가구의 교육수준 구성

(단위 : %)



주 : '가구주>배우자'는 가구주가 배우자보다 교육수준이 높은 가구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 종사 산업별 맞벌이 가구 규모(2018년 기준)

(단위 : 천 가구)

		가구주의 배우자								전체
		1	2	3	4	5	6	7	8	
가 구 주	1. 농림어업	492	19	1	5	35	8	15	30	606
	2. 광업 제조업	7	314	14	62	157	71	116	188	928
	3. 건설업	9	62	64	27	119	45	49	108	484
	4. 전기, 운수, 통신, 금융	8	71	11	115	138	67	111	141	664
	5. 도소매, 음식숙박	6	49	15	47	553	47	71	112	899
	6. 수도, 부동산, 전문, 사업서비스	8	46	8	42	103	141	99	127	574
	7. 행정, 교육	7	21	6	24	52	30	228	88	456
	8. 보건, 여가, 협회, 기타	5	27	11	21	53	28	50	187	382
	전 체	542	609	131	344	1,210	437	739	981	4,993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대분류 기준으로 나누었음.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있는 경우6)가 210만 가구로 전체의 42%를 차지하였다. 맞벌이 부부 조사가 시작되었던 2011년(44.4%)과 비교할 때, 맞벌이 가구의 산업 구성이 다소 다양해지고 있다. 서로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주로 제조업, 배우자는 보건 및 사회복지, 여가 및 여가 스포츠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녀 유무와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유지해 나가는 것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자녀의 유무이다.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상황에 따라서 경제활동참가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8세 미만 자녀 여부 및 자녀 수에 따른 맞벌이 참가 비율을 살펴보면(표 5 참조), 2018년에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7) 43.4%의 부부가 맞벌이를 선택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 참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자녀가 1명이거나 2명일 경우에는 51~52%, 3명 이상인 경우는 48.1%로 나타났다. 2017년을 제외하면, 2014~2018년 기간 동안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맞벌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배우자의 연령이 30대인 경우, 자녀가 없는 부부가 맞벌이인 비율은 2014년 53.3%에서 2018년 61.2%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자녀가 1명인 부부가 맞벌이인 비율은 무자녀의 경우보다 연도와 상관없이 15%p 내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가 2명일 때 맞벌이 비율은 오히려 1명일 때보다 높았다.

6) 대분류(21업종) 기준으로 종사하는 업종이 일치하는 맞벌이 가구는 189만 가구(37.8%)이다.  
 7)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연령이 모두 18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표 5〉 18세 미만 자녀유무별 맞벌이 가구 비율

(단위 : %)

	전 연령					30대 배우자				
	무자녀 + 18세 이상 자녀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무자녀	1명	2명	3명 이상	전체
2014	42.4	47.3	47.0	41.7	44.1	53.3	39.6	41.8	36.0	42.6
2015	42.1	47.3	47.5	42.2	44.1	54.0	40.1	41.4	38.1	42.9
2016	43.3	48.4	48.8	44.6	45.2	57.9	42.4	43.7	40.0	45.5
2017	41.8	49.2	49.0	43.2	44.4	57.3	44.9	46.2	39.1	47.4
2018	43.4	51.2	51.7	48.1	46.3	61.2	46.7	48.8	43.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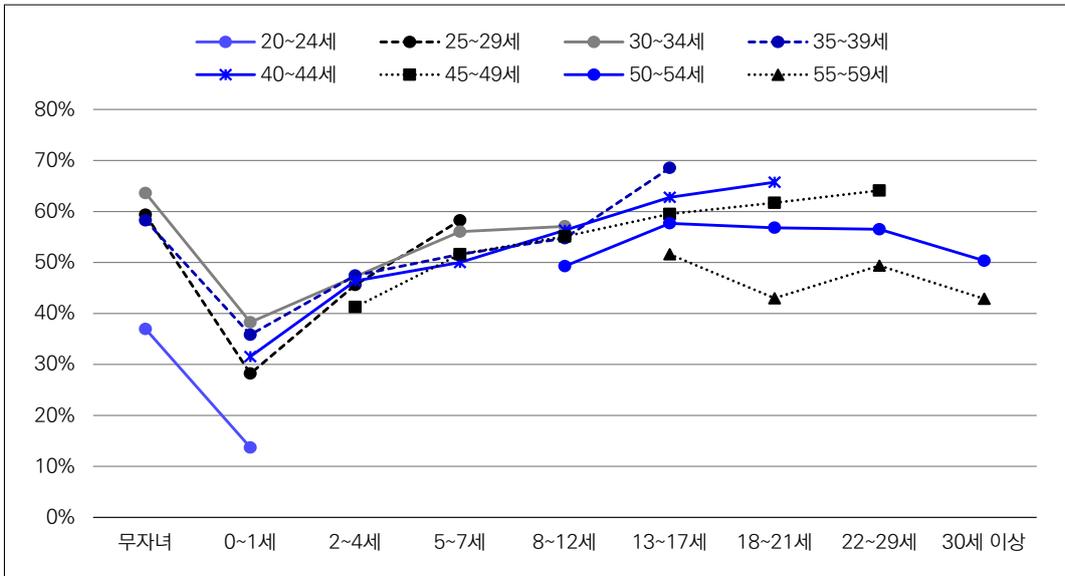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추가로 배우자의 연령과 막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맞벌이 여부를 [그림 3]과 같이 살펴보았다. 배우자의 연령대에 상관없이 대체로 자녀가 없을 때는 60% 내외의 맞벌이 가구 비율을 보이지만, 0~1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 비율이 30~40% 수준으로 낮아지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자녀가 성장하면서 배우자의 맞벌이 참가가 점차 증가하고, 자녀가 성인인 된 이후부터는 점차 맞벌이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를 볼 수 있다.

막내 자녀의 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 맞벌이 비중이 증가하지만 배우자의 연령대에 따라

〈그림 3〉 막내 자녀의 연령대 및 배우자의 연령층에 따른 맞벌이 가구 비중(2018년 기준)

(단위 : %)



주: 각 연령별로 ±1세를 평균하여 맞벌이 가구 비중을 계산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자녀의 연령대가 동일한 경우, 배우자의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맞벌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가 만 13~17세인 경우, 50대 후반의 배우자는 50% 내외, 40대 초반은 60%가 넘고, 30대 후반의 경우 70%까지 증가하여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최대 20%p의 차이를 보인다.

### Ⅲ. 맞벌이 가구의 경제활동

#### 1. 맞벌이 부부의 임금수준과 근로시간

물가수준(2015=100)<sup>8)</sup>을 고려하여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임금(지난 3개월 평균임금)을 외벌이 가구주의 소득과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2013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 임금 합계는 479만 원(가구주: 299만 원, 배우자: 180만 원)으로 외벌이 가구주의 월평균 임금 316만 원의 1.52배 수준이었다. 월평균 임금이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가구주 비율을 비교할 때, 맞벌이 가구주보다 외벌이 가구주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18년에는 500만 원 이상 월평균 임금을 받는 외벌이 가구주 비율은 감소했지만(2013년 11.8%→2018년 10.7%), 맞벌이 가구주 비율은 증가하여 대조를 보였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월평균 임금 합계는 538만 원(가구주: 330만 원, 배우자 208만 원)으로 외벌이 가구(338만 원)의 1.59배 수준을 보여 차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가구주의 배우자는 월평균 154만 원을 받고 있고, 5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가구주의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은 319만 원으로, 가구주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임금수준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근로시간(주업 기준)<sup>9)</sup>의 경우, 2013년에는 외벌이 가구주와 맞벌이 가구주가 평균적으로 주당 46.3시간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2018년에 외벌이 가구주는 주당 43.4시간, 맞벌이 가구주는 43.7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그러나 주 53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자는 외벌이 가구주에서 더 많은 편이다. 배우자의 경우, 주당 38.5시간으로 2013년 41시간보다 2.5시간 감소했다. [그림 4]는 2013년과 2018년의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차이별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에서 가구주 또는 배우자의 근로시간이 더 긴 비율이 감소하고, 근로시간이 같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구주의 근로시간이 배우자보다 20시간 이상 길었던 비율이 2013년 32.6%에서 2018년에 27.8%로 감소했다. 앞서 살펴본

8) 조사 시기(2012~13: 6월, 2014~18: 10월)의 소비자물가지수(2015=100(%))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9) 조사기간 시기에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의미한다.

〈표 6〉 외벌이, 맞벌이 가구주의 임금수준별 분포 및 배우자의 평균 월 임금 수준

(단위: 천 가구, 만 원/월, (2015=100))

	2013년 10월			2018년 10월		
	외벌이 가구주	맞벌이 가구주	배우자 임금수준	외벌이 가구주	맞벌이 가구주	배우자 임금수준
비임금근로자	1,122 (26.0%)	2,015 (43.2%)	163	999 (25.4%)	1,960 (39.3%)	190
200만 원 미만	781 (18.1%)	634 (13.6%)	130	760 (19.3%)	675 (13.5%)	154
200~299만 원	853 (19.8%)	803 (17.2%)	162	788 (20.0%)	933 (18.7%)	188
300~399만 원	682 (15.8%)	610 (13.1%)	197	598 (15.2%)	675 (13.5%)	222
400~499만 원	368 (8.5%)	299 (6.4%)	238	371 (9.4%)	395 (7.9%)	258
500만 원 이상	511 (11.8%)	306 (6.6%)	290	420 (10.7%)	355 (7.1%)	319
취업자	4,317	4,666	180	3,935	4,993	208

주: ( ) 안은 임금수준별 비율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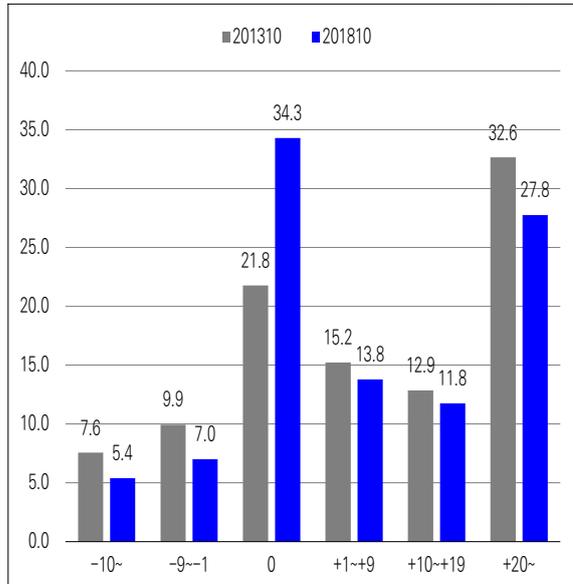
〈표 7〉 외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실제 근로시간 [그림 4]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차이별 비율

(단위: 천 가구, 시간/주)

(단위: %)

	외벌이 가구주	맞벌이 가구주	맞벌이 배우자
취업자	3,935 (-388)	4,993 (327)	
비임금근로자	999 (-125)	1,960 (-55)	1,624 (-117)
15시간 미만	67 (32)	54 (30)	211 (72)
15~35시간	198 (66)	144 (41)	601 (179)
36~44시간	1,525 (147)	1,658 (479)	1,867 (405)
45~52시간	788 (-210)	845 (23)	536 (-82)
53시간 이상	358 (-298)	333 (-191)	155 (-129)
실제 근로시간	43.4 (-2.9)	43.7 (-2.6)	38.5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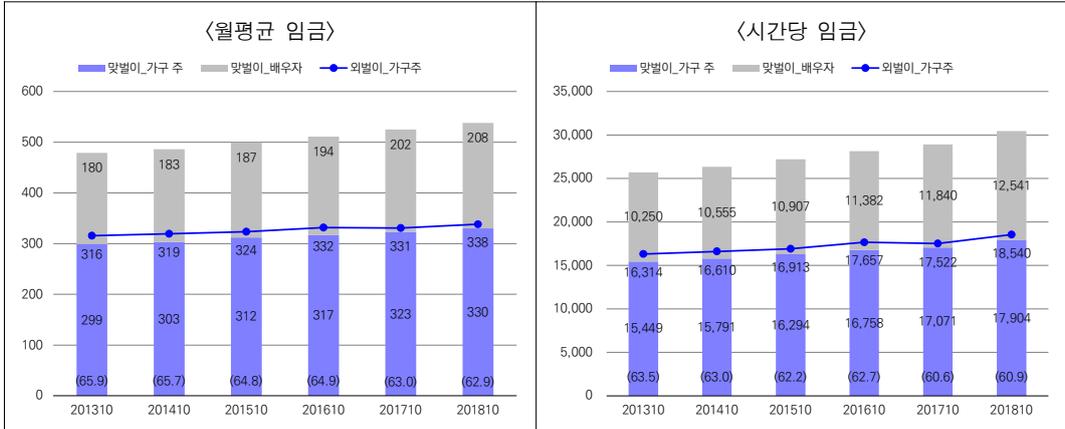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2013년 대비 가구 수 증감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주: 가구주 근로시간 - 배우자 근로시간.

[그림 5] 맞벌이 가구 형태별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추이

(단위 : 만 원/월, 원/시간, (%), (2015=100))



주 : 괄호 안은 맞벌이 부부의 임금 합계 대비 외벌이 가구주의 임금 비중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의 결과를 참고할 때, 근로시간 관리가 비교적 용이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난 것이 반영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월 임금을 실제<sup>10)</sup>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sup>11)</sup>으로 전환하면 [그림 5]의 오른쪽과 같다. 2018년에 맞벌이 가구주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7,904원, 배우자는 12,541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각각 5%, 6% 증가했다. 2014년 배우자의 임금 증가율이 3%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임금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외벌이 가구주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18,540원으로 맞벌이 부부의 임금수준을 합친 것의 60.9%를 차지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주와 450~900원의 임금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배우자의 임금수준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의 임금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맞벌이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앞서 살펴본 맞벌이 부부의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에 이어서, 본 절에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가구마스터 및 가구원 자료)를 분석하여 맞벌이 가구의 소득 및 지출을 외벌이 가구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모두가 경제활동상태인 경우를 맞벌이 가구로 정의하였다. 횡단 및 패널 분석이 가능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의

10)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토대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게 될 경우, 평소 근무시간으로 시간당 임금을 계산했을 때보다 과소,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다.  
 11) 시간당 임금 = 3개월 평균 월 임금/주당 근로시간 \* (30.4/7)

경우,<sup>12)</sup> 취업상태 및 자산수준 등의 저량(stock)과 소득, 지출수준 등의 유량(flow)의 조사 기준 시점이 상이하다.<sup>13)</sup> 이러한 자료의 특징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시점과 소득시점을 조정하고, 조사 기준시점(2015=100)에 따른 물가수준을 고려한 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파악되는 맞벌이 가구<sup>14)</sup>는 2018년 조사 기준 641만 가구로,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인 가구는 336만 가구, 모두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인 가구는 147만 가구, 부부의 종사상 지위가 임금 및 비임금근로 조합을 가지는 가구는 158만 가구로 파악이 된다. 먼저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인 맞벌이 가구의 근로소득 수준을 살펴보면(표 8 참조), 맞벌이 부부의 2018년 연간 근로소득은 7,857만 원으로 2017년 대비 약 370만 원 증가하였다. 외벌이 가구와 비교해 보면 약 2,200만 원 더 많다. 2012년에는 차이가 약 1,500만 원 수준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2012년 이후 증가했지만, 외벌이 가구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적었다. 반면 50대와 60세 이상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보다 외벌이 소득의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sup>15)</sup> 동일가구를 구분하고 나서 2018년 기준 맞벌이 부부의 2017년 당시와 2018년의 소득 수준을 비교하면 [그림 6]과 같다. 부부 모두 임금근로자인 경우 전체

〈표 8〉 맞벌이 가구(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sup>16)</sup>

(단위: 만 원/연도, (2015=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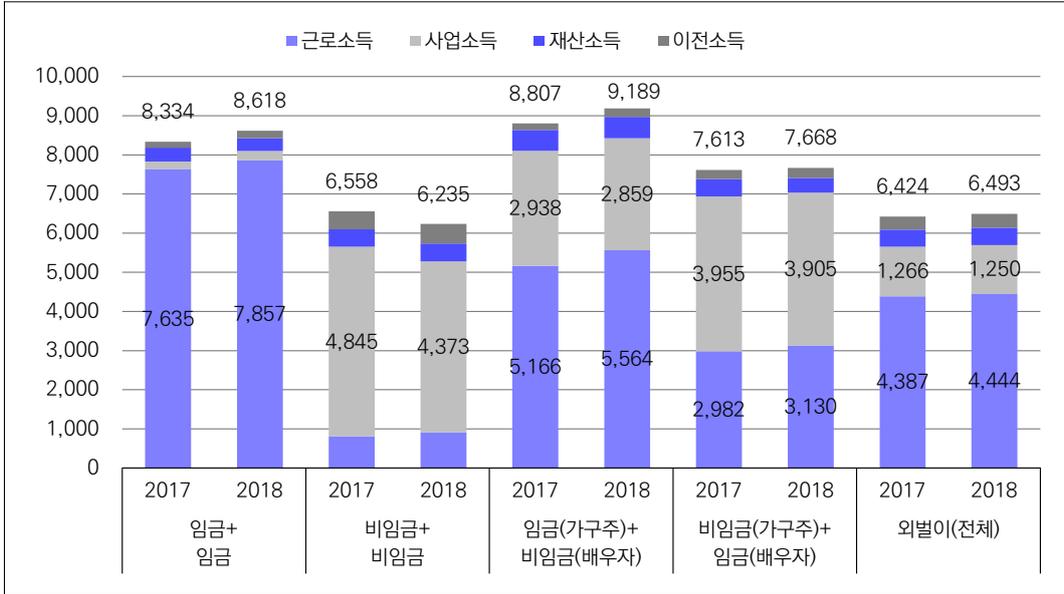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전체 연령
2012	6,455 (4,466)	6,435 (5,472)	6,339 (5,554)	3,400 (2,499)	6,185 (4,650)
2013	6,384 (4,542)	6,573 (5,530)	6,418 (5,980)	3,725 (2,641)	6,255 (4,814)
2014	6,572 (4,591)	6,795 (5,687)	6,981 (6,024)	3,962 (2,474)	6,580 (4,862)
2015	6,638 (4,557)	6,960 (5,699)	6,824 (6,168)	4,025 (2,690)	6,596 (4,877)
2017	7,226 (4,831)	7,986 (6,180)	8,075 (7,192)	4,605 (3,140)	7,489 (5,379)
2018	7,597 (5,173)	8,686 (6,192)	8,297 (7,510)	4,844 (3,471)	7,857 (5,634)

주: 괄호 안은 외벌이 가구(임금근로)의 연간 근로소득.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 12) 가계금융복지조사는 5년마다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2012~2016년과 2017년 이후의 조사 표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 13)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제8회)에서 자산, 부채, 가구구성 등의 조사 기준시점은 2019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과 지출, 원리금상환액은 2018년 1.1~12.31을 조사 기준시점으로 하고 있다.
- 14) 동거 중인 가구원의 정보만 파악이 가능한 지역별고용조사와 달리,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동거 중이지 않은 가구원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 15) 2017년 당시의 소득자료는 2018년 조사, 2018년 소득자료는 2019년 조사에 해당하는데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두 시기를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 16) 2018년(제7회) 조사의 경제활동상태(3월 31일)와 2019년 조사의 소득수준(2018년)을 매칭하여 조사하였다. 가장 마지막으로 조사된 2016년과 2019년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득수준 파악이 불가능하다.

[그림 6] 2018년 기준 소득형태별 맞벌이 가구의 소득수준

(단위 : 만 원/연도, (2015=100))



주 : 2018년 조사(제7회) 기준 맞벌이 가구의 2017(제7회), 2018년(제8회) 소득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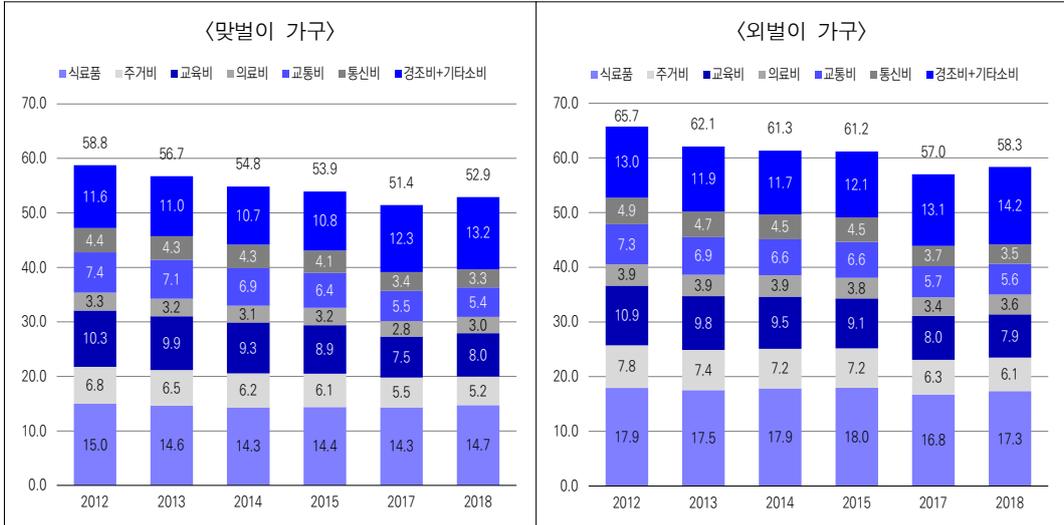
소득이 284만 원 증가했고, 부부가 모두 비임금근로자인 경우는<sup>17)</sup> 전체 소득이 6,235만 원으로 323만 원 감소했다. 특히 사업소득이 전년보다 472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분위에서의 자영업자 비율이 감소한 영향<sup>18)</sup>으로, 가구원 중 하나가 자영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을 보면, 2018년 기준 맞벌이 가구의 지출비중은 52.9%(연간 소비지출액<sup>19)</sup> 3,418만 원, 처분가능소득 6,460만 원), 외벌이 가구의 지출비중은 58.3%(지출액 3,049만 원, 처분가능소득 5,226만 원)로 외벌이 가구의 지출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출품목별로 교육비, 통신비, 주거비의 지출비중이 감소하면서 전체 지출비중은 2012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교육비는 두 가구 모두 소득대비 8% 수준의 지출비중을 나타내고 있지만 소득수준을 고려하면 맞벌이 514만 원, 외벌이 414만 원으로 1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타소비(맞벌이 856만 원, 외벌이 740만 원)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식료품(외식비 포함)과 의료비, 주거비의 경우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17) 실적급의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의 종사자는 비임금근로자로 분류하였다.  
 18) 통계청,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도자료(2019. 12. 17.) 참고.  
 19) 2018년까지 지출품목별 소비수준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복지부문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금융부문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19년 이후로는 전체 부문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7] 소득대비 지출품목별 지출비중 추이

(단위 : %, (2015=100))



주: 식료품은 외식비, 교육비는 보육비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패널데이터라는 점을 응용하여, 맞벌이 가구의 이행에 따른 소득 및 지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전년도에는 맞벌이 가구가 아니었으나 이후 맞벌이 가구로 조사된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등을 취합하여 소득수준 및 지출규모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조사연도의 일정시점(3월 31일)을 기준으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까지의 경제활동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이행이 되었다고 가정하였다.<sup>20)</sup>

맞벌이 가구 이행을 분석한 <표 9>를 살펴보면, 2018년 조사를 기준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외벌이 가구는 203만 가구, 2018년에 맞벌이를 시작해서 2019년까지 맞벌이를 이어가는 가구는 47만 가구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40대가 되거나 자녀가 5세를 넘어가면서 맞벌이 가구로 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맞벌이를 유지하는 경우는 266만 가구, 2018년 이후 맞벌이를 그만두고 외벌이로 이동한 경우는 38만 가구였다. 자녀가 새로 태어나거나 22세의 연령을 넘어가는 시기에 맞벌이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맞벌이가 된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430만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벌이를 유지한 가구가 152만 원 증가했으므로 맞벌이 이행에 따른 280만 원가량의 소득 증가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소비지출은 241만 원 증가하여 외벌이 가구보다 130만 원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20) 예를 들어 2018년을 기준으로 전년(2017년)에는 맞벌이 가구가 아니었으나 2018년에 맞벌이 가구이며 2019년 조사에도 맞벌이 가구인 경우를 온전하게 맞벌이로 이행이 된 가구로 가정하였다. 이때 3년 이상 조사에 응답이 되어 있어야 한다.

상당부분이 교육비(보육비 포함)와 기타소비(경조사비 포함)의 증가로 이어졌다. 외별이를 유지할 경우보다 지출이 늘어나면서 소득 대비 소비비율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반대로 맞벌이 가구에서 외별이 가구로 이동한 경우 근로소득이 208만 원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이전소득(77만 원), 재산소득(47만 원)이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은 65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이나 아동수당과 같은 정부지원정책이나 연금, 가구이전(용돈) 등 맞벌이를 그만두더라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맞벌이를 유지했을 경우 226만 원의 소득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290만 원의 소득이 감소하여 맞벌이 이동 여부에 대한 소득 변화는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이 65만 원 감소했으나 소비비율을 끌어올리면서 소비는 30만 원가량 낮아졌다. 식료품의 지출은 거의 변하지 않는 반면, 주로 기타소비에서 크게 낮아졌으며 교육비는 오히려

〈표 9〉 맞벌이 가구의 이행 여부와 소득 및 지출수준 변화(2018년 기준)<sup>21)</sup>

(단위 : 천 가구, 만 원/연도, (2015=100))

	외별이 유지	외별이→맞벌이	맞벌이 유지	맞벌이→외별이
가구 수	2,033	465	2,664	378
소득(전체)	152	430	226	-65
근로소득	95	308	215	-208
사업소득	24	161	-19	19
재산소득	-1	-41	3	47
이전소득	34	2	28	77
소비(전체)	109	241	100	-29
식료품	37	73	32	-1
주거비	13	-29	-6	-4
교육비	3	77	0	16
의료비	15	-8	10	10
교통비	2	14	-8	11
통신비	-6	9	-6	-2
기타소비	45	105	79	-57
소비비율(△%)	-0.6	-0.1	0.1	2.3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각 연도.

21)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데이터를 결합(merging)할 수 있는데, 여기서 B-A가 맞벌이 가구로 이행했을 경우 소득 및 지출의 변화를 의미하게 된다.



증가하였다. 자녀를 출산하고, 학교를 보내는 등 가구상황에 맞게 맞벌이를 선택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유아 자녀의 보육비와 중등교육을 받는 자녀의 교육비(과외 및 학원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지출변화<sup>22)</sup>를 확인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 IV. 맺음말

최근 고용성장이 둔화되는 노동시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활발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다. 주로 30~50대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면서, 배우자와 함께 경제활동을 하는 맞벌이 가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맞벌이 가구의 노동시장 상태와 경제활동 수준을 살펴보았다. 혼인 가구가 좀처럼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맞벌이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존 맞벌이 가구는 40~50대 및 비수도권 지역에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을 위주로 분포해 었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30대 맞벌이 가구가 늘고 있다. 자녀유무에 따라 맞벌이 여부가 달라지는데, 비슷한 연령의 자녀를 두고 있으나 배우자의 연령대가 많을수록 맞벌이 비율은 낮아지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수준을 외벌이 가구와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맞벌이 가구의 소득수준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와 외벌이 가구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가 약 100만 원 지출이 더 많았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맞벌이와 외벌이 이동에 따른 소득수준 변화는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이동하면서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증가했다. 또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이동하면서 낮아진 근로소득을 재산소득이나 이전소득을 통해 보전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여전히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성보호제도가 시간이 흘러 정착이 되고, 보육시설과 지원이 점진적으로 확충이 되면서 맞벌이 가구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 반면 여전히 모성보호제도가 부족한 기업이나 보육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출산과 육아계획을 미루면서 맞벌이 상태를 이어나가는 등 맞벌이 가구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복잡한 측면

22) 구체적인 지출품목별 소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해야 하지만 조사개편(2017년) 이후 가구의 소득수준을 연계하여 분석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이 존재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혼인 및 자녀계획에 따른 맞벌이 이행과 생활의 변화에 대한 모성보호제도 등 정책이 끼친 영향을 살펴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기를 기약한다. **KLI**